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4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9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4543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6. 12. 1

판결 선고 2017. 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도로 69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64. 1. 6. 접수 제20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C 도로 1,326㎡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1964. 1. 6. 접수 제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37. 2. 15. 인천 서구 B 도로 694㎡와 C 도로 1,326㎡(원래 부천군 E였다 가 위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인 D는 1958. 7.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 속하였다.

다. 피고는 1964. 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0. 3. 25.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그 후 농지분배절차를 밟지않은 채 지금까지 여전히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저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登記되거나 확인된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수되었으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몽리농지에 부속된 농도로서 몽리농 지와함께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 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게된다.

여기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 몽리농지의 경영에직접 필요한 도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2429판결, 대법원2010. 3. 11. 선고 2009다87386판결 등 참조).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된 농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원고 승소

판사 이상원